

#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

## 1 성희롱·성폭력 이해

### 1 성희롱

#### □ 성희롱의 개념

##### ○ 일반적 개념

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(性的)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

##### ○ 법적 개념

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’, ‘성적 언동 등으로’ ‘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’

※ 근거법률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## □ 성희롱 판단기준

구분	양성평등기본법	국가인권위원회법	남녀고용평등법
행위자	국가기관 등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	공공기관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	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
피해자	불특정		다른 근로자
업무관련성	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(* 국가인권위원회법: 직위)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		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
행위방법	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	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	
행위로 인한 피해	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	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	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

※ 사업주는 고객(민원인)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 있음(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)

## 2 성폭력

### □ 성폭력의 개념

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

※ 근거법률: 「형법」, 「군형법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성폭력처벌법)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: 청소년성보호법)」,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성폭력방지법)」

### □ 주요 성폭력 범죄

범죄유형	성립요건(침해방식)
강간, 유사강간 등 형법 제297조(강간) 제297조의2(유사강간)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 제301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 제301조의2(강간 등 살인·치사) 제339조(강도강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간음(성기삽입)하거나 성기를 제외한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제외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,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 제외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</li> <li>※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,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,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 가능</li> </ul>
강제추행 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 자체가 폭행인 경우도 포함하며, 성욕을 자극, 흥분,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</li> </ul>
준강간,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(준강간, 준강제추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으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로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,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</li> </ul>
피보호자간음·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</li> </ul>
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2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, 목욕장·목욕실 또는 발한실(發汗室), 모유수유시설,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통신매체이용음란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3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</li> </ul>
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'반포등')</li> <li>※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</li> </ul>
허위영상물편집·반포등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의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'영상물등'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'편집등')하거나, 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)을 반포등을 하는 것</li> <li>※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것도 처벌</li> </ul>

## □ 디지털성폭력의 개념

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으로,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출·협박·소지·구입·저장·전사·합성·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

※ 근거법률: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## □ 주요 디지털성범죄 유형

유형	내용(특징)	적용법률	예시
촬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설치형/직접 촬영형</li> <li>·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</li> <li>·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</li> </ul>	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 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</li> <li>·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</li> </ul>
제작	<p>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·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·유사성교·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</p>	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11조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폭행·협박으로 아동·청소년으로 하여금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</li> <li>·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</li> </ul>
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적 촬영물 유포/재유포</li> <li>·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/재유포</li> </ul> <p>※ 유포자가 직접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, 촬영 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죄는 미성립 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죄는 성립 가능</p>	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제2항, 제3항, 제5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인 등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(성관계, 자위, 누드 등)을 동의 없이 유포</li> <li>·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</li> </ul>
		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 제1항 제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법촬영물이거나 불법유포물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 유포시 음란물유포로서 처벌</li> <li>·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</li> </ul>
허위 영상물 (합성·편집)	<p>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,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, 합성, 가공 및 유포</p>	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의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딥페이크, 지인능욕 등</li> </ul>
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</li> <li>·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</li> </ul>	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의3 「형법」 제283조, 제32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</li> <li>· 연인 간 이별시,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,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</li> <li>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,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</li> </ul>
유통/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법촬영물·편집물,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</li> </ul>	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 Internet service provider : ISP)</li> </ul>

	<p>판매·유통, 유포 방조 및 협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·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</li> </ul>	<p>관한 법률」 제42조, 제44조의7</p> <p>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3, 제22조의5, 제22조의6, 제92조, 제96조, 제104조</p> <p>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제4항</p> <p>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11조제2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3항·제5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법촬영물 및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판매·유통 및 유포 방조 처벌</li> <li>· 불법촬영물등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</li> </ul>
<p>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</p>		<p>「성폭력처벌법」 제13조</p> <p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」 제70조</p> <p>「형법」 제307조</p> <p>「형법」 제311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</li> <li>· 게임 내 성희롱</li> <li>· 단톡방 내 성희롱</li> </ul>

### 3 스토킹

#### □ 직장 내 스토킹의 개념

원하지 않는 사적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, 좋아한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하여 시도하는 행위

※ 근거법률: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#### □ 주요 디지털성범죄 유형

구분	정의	조치
<p>스토킹 행위 (제2조제1호)</p>	<p>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</p> <p>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</p> <p>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등”이라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</p> <p>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</p> <p>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</p> <p>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</p>	<p>경찰: 응급조치 (제3조) 긴급응급 조치 (제4조)</p>
<p>스토킹 범죄 (제2조제2호)</p>	<p>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</p>	<p>형사처벌 잠정조치 (제9조)</p>

## 2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

### 1 고충상담 및 신고방법

- 내용: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
- 대상: 피해자, 제3자 신고 가능
- 방법: 원장, 고충상담원
  - 온 라 인: 원장 핫라인(worker9192@jeonbuk.pass.or.kr)
  - 오프라인: 고충상담원
    - 전화: 906-4040(이가을 팀장), 906-2062(김준홍 사회복지사)
    - 메일: autumn@jeonbuk.pass.or.kr(이가을), kjhung4566@jeonbuk.pass.or.kr(김준홍)
    - 방문: 본부 1층 시설운영팀(이가을), 전북인돌봄센터 2층(김준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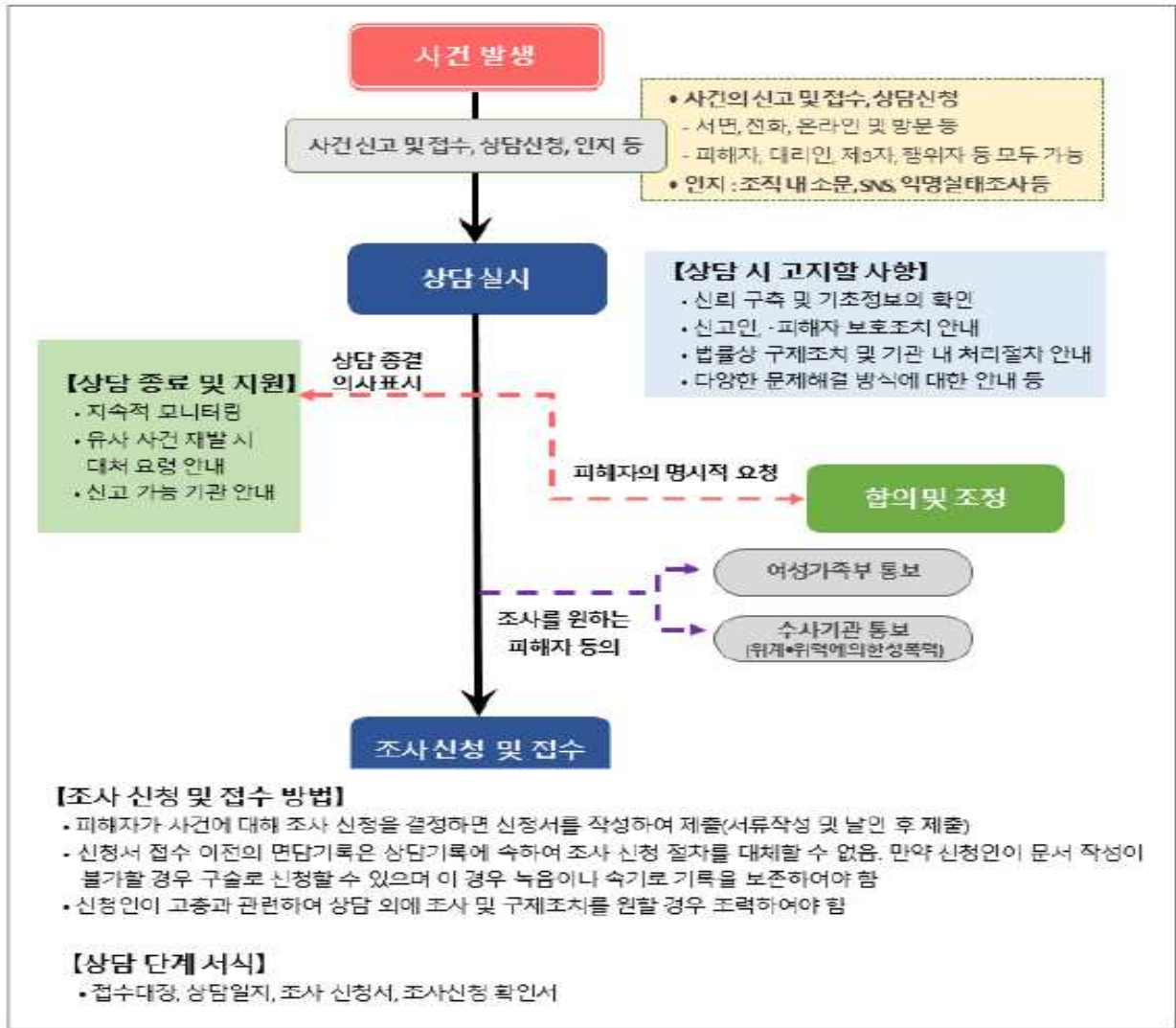
### 2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절차

- 사건 처리절차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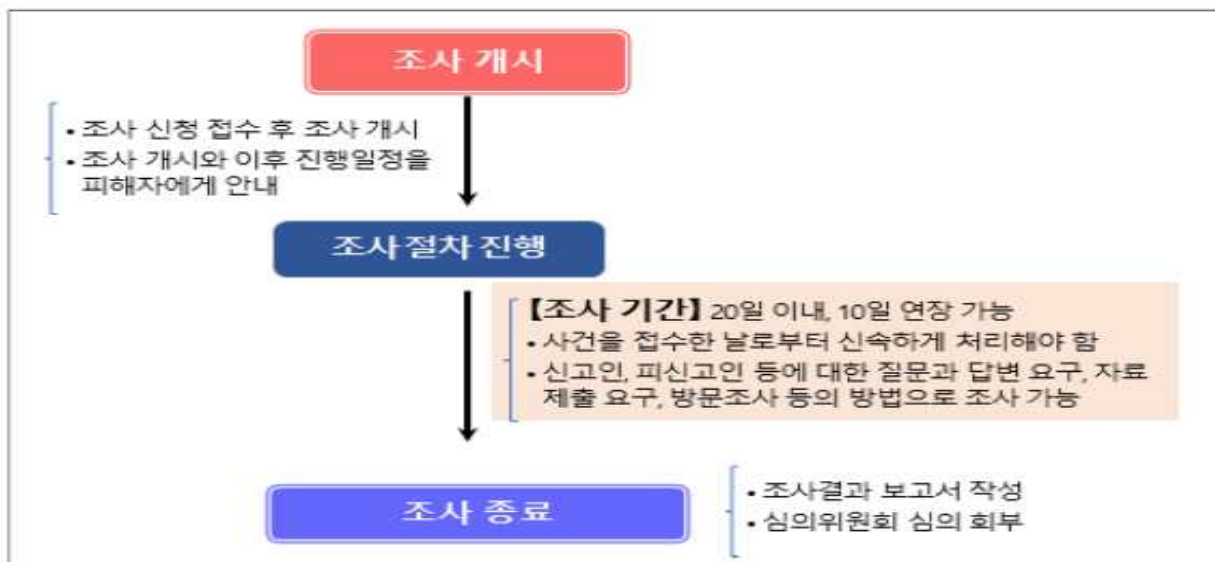
구분	추진내용	추진주체 및 제출자료
1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담신청</li> <li>○ 신고</li> <li>○ 인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해자, 대리인, 제3자 상담·신고</li> <li>○ 서면, 전화, 온라인, 방문</li> <li>○ 소문, 블라인드앱, 익명실태조사</li> </ul>
2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담 실시</li> <li>○ 조사신청 및 접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건의 개용 및 입증자료 확인</li> <li>○ 사건처리절차 안내</li> <li>○ 피해자보호조치 등 확인</li> <li>○ 조사신청서 접수</li> <li>○ 사건통보·수시기관 신고여부 확인</li> </ul>
3단계	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</li> <li>○ 조사결과 보고</li> <li>○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</li> </ul>
4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회 심의</li> <li>○ 조치 결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희롱(성폭력) 여부에 대한 판단</li> <li>○ 피해자보호조치 권고</li> <li>○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권고</li> <li>○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</li> </ul>
5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결</li> <li>○ 재발방지 대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</li> <li>○ 피해자보호조치 결정</li> <li>○ 여가부 및 주무부처 보고</li> <li>○ 재발방지대책 수립</li> </ul>

### 3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세부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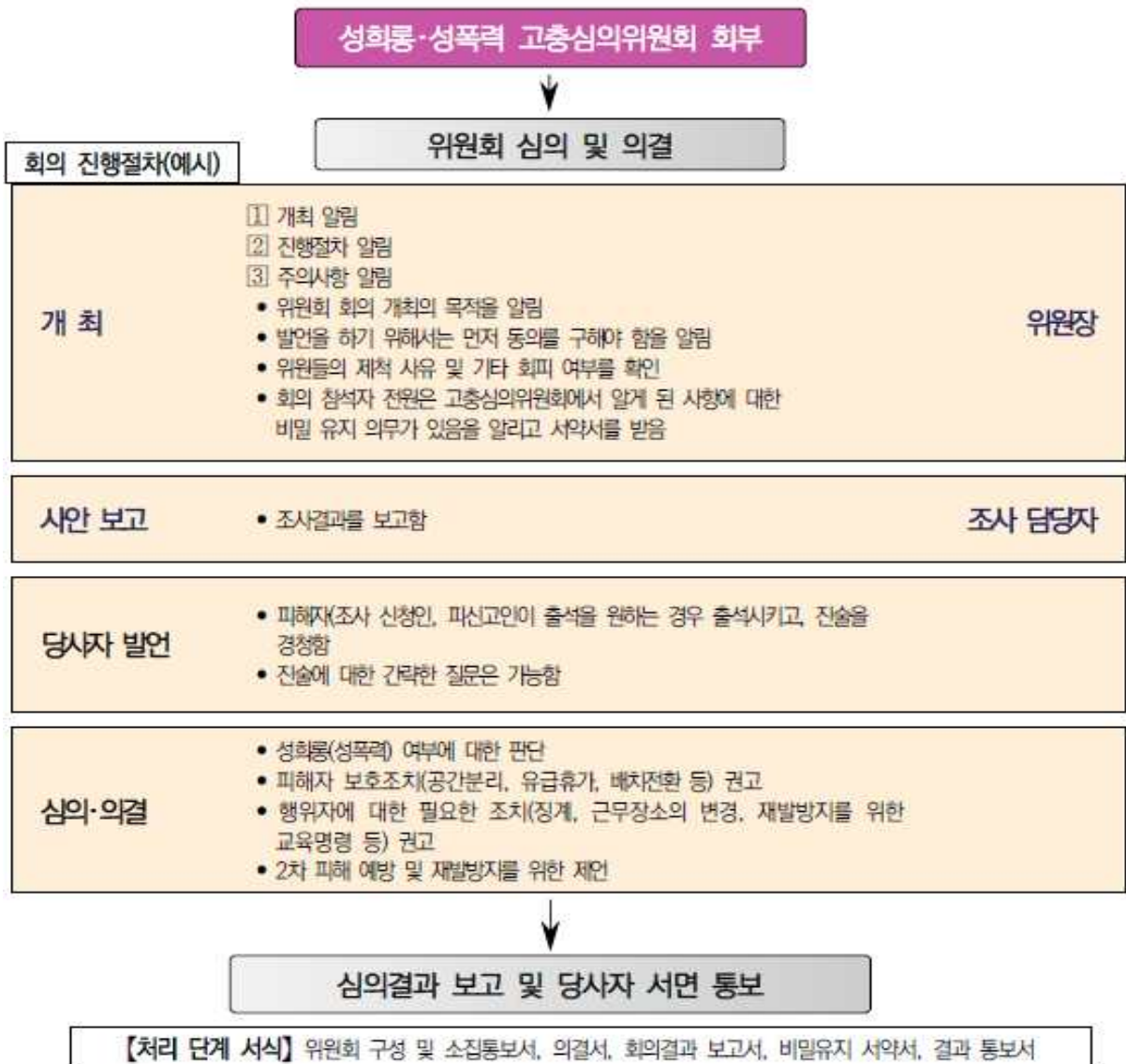
#### □ 상담 신청·인지·신고 및 조사 신청 접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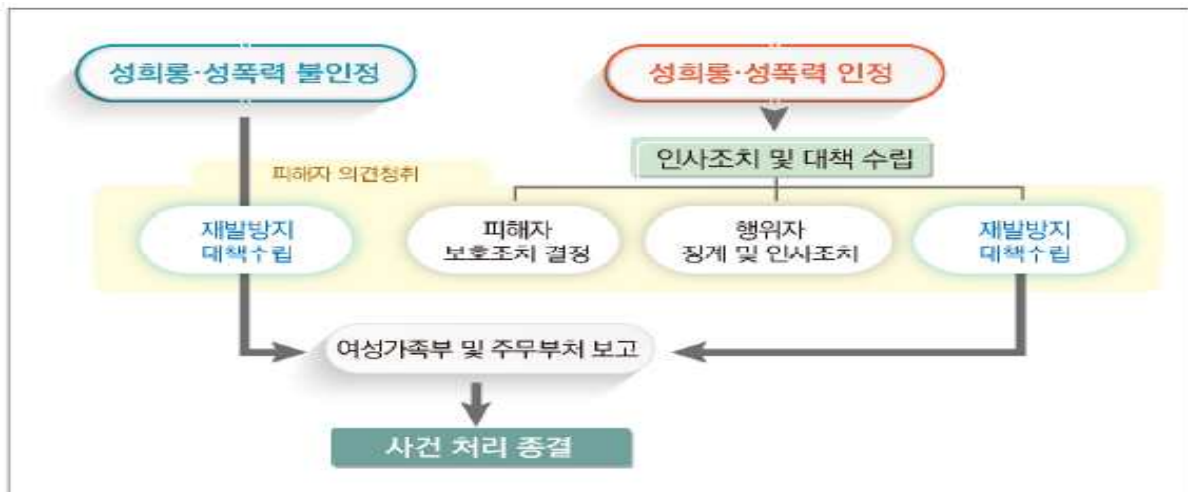
#### □ 조사



□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



□ 사건종결



### 3 원장 · 고충상담원 등 역할 및 대응

#### 1 원장

- 성희롱·성폭력 매년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시
- 법정 의무교육, 고충상담원 지정, 사건 처리절차 마련 등 성희롱·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
-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실관계 확인 시 징계 등 조치
- 성희롱·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 강구

#### 2 관리자

- 피해자와 면담으로 사건 인지 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 신고 및 면담 내용 공유, 피해자 조치 논의
- 면담 시 사건 판단·조정하지 않고 피해자 상황 경청 및 공감하며,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 등 필요한 정보 전달 역할 충실
- 사건 조사 진행 시 최초 면담자로서 조사 협조
- 사건 종료 후에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강화,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 예방 활동 노력

#### 3 고충상담원

- 기관 고충처리제도 전반 숙지, 성희롱·성폭력 전문성 제고 노력
-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자체 점검 노력
- 예방활동 관심 및 예방계획 담당시 예방계획 수립
- 고충상담창구·사이버 신고센터 설치, 방문·서면 등 상담 가능 홍보
-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, 홍보 또는 상시 게시
- 고충 상담 시 '적극적 경청' 태도 유지
- 사건 진행 시 관련 지침, 매뉴얼, 절차 등 점검
- 기관에서 피해자 조력 규정 점검 및 적절한 피해자 조력 노력
- 고충상담원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 기관차원 지원제도 마련

#### 4 피해자

- 성희롱·성폭력은 행위자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탓이 아님 인지
- 성희롱·성폭력 행위 거부 의사 전달은 법적·제도적 절차 시 도움
- 성희롱·성폭력 해결절차 숙지 및 기관의 지원체계 확인 후 해결 방법 모색
- 행위자 사과,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한 합의 및 조정, 행위자 처벌 등 요구 등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법 강구
- 기관 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기관 이용 단, 기관 내 제도 이용이 우선은 아님
- 행위자의 언행 사내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발생 유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상담기관 등과 상의
-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드시 문제 제기 및 증거 확보

#### 5 동료 근로자

- 피해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 발생 시 농담이나 함께 웃지 않고 해당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
-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 할 때까지 먼저 이야기 금지
- 피해자 이야기 당시 행동 판단 및 충고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이 아님 안내
- 피해 사실 회사 신고한 경우, 심적 지지태도 유지, 함께 논의 등 피해자에게 도움
- 피해자가 지지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 및 일상생활 유지 조력
- 사내의 피해 구제절차 후에도 피해 후유증 치유 필요 안내
- 피해자 비난, 허위소문 유포 등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해위임 인식